

독도 · 센카쿠제도 · 북방영토에 대한 일본정부의 차별적 영유권 인식

최 장 근*

(e-mail: nihonbu@daegu.ac.kr)

目 次

1. 들어가면서
 2. 일본의 영토문제의 발생경위
 3. 일본국회의 기본적인 영토인식
 4. 센카쿠제도와 독도의 영토적 권원의 비교 인식
 5. 북방영토와 독도의 영토적 권원의 비교 인식
 6.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와 미국에 대한 인식
 7. 맺으면서
-

1. 들어가면서

2012년 12월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하여 아베 신조가 총리로 선임되었다. 아베는 세계 보편적인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민족의 자존심과 눈앞의 국익에만 집중하는 편협한 민족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다.¹⁾ 이런 관점에서 아베정권의 대두와 더불어 동아시아의 영토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 예상된다.

*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일본정치 전공

1) 「아베 극우행보 목적지는 전범역사 탈피」,

<http://news.mk.co.kr/newsRead.php?sc=60200111&year=2013&no=703155> (검색일 2013년8월19일)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극우 행보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국방력 강화다. 바퀴 말해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 일본에 그동안 부과돼온 ‘전범체제’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703155>[검색일 : 2014년2월27일])라는 지적이 있다.

현재 센카쿠제도는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晋三)정권이 섬을 국유화함으로써 중국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²⁾ 북방영토는 현재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다.³⁾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정부는 일본국민과 국제사회를 통해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주장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본정부에 대해 한국영토라는 입장을 관철시켜왔다. 영유권 문제는 표면적으로 서로가 영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외적인 주장과 달리 자신들의 주장이 지나치다는 내적인 입장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일본이 센카쿠제도분쟁, 북방영토분쟁, 독도문제를 두고 주변 3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의 주장이 얼마나 합당한가에 관해 국회의사록⁴⁾(1950-70년대)을 분석하여 고찰하려고 한다. 동시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모순성을 고찰하려고 한다.

2. 일본의 영토문제의 발생 경위

1945년 일본이 패전과 더불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연합국이 포츠담선언에 의거하여 영토조치를 단행했는데, 이에 대해 일본이 이의를 제기하여 영토문제가 여러 군데 발생하게 되었다. 일본에 있어서 전후 미결된 지역은 오키나와제도(沖繩諸島), 아마미 오시마(奄美大島),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 죽도(竹島), 북방영토(北方領土), 센카쿠제도(尖閣諸島) 등이다. 대일평화조약에서 오키나와, 아마미 오시마, 오가사하라군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잔존주권이 인정되어 아마미 오시마는 1953년, 오가사와라도는 1968년, 오키나와는 1972년에 반환되었다. 독도와 북방영토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관리하던 지역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연합국이 대일평화조약에서 잔존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여 영토문제가 발생되었다. 독도문제는 대일평화조약 이후 1952년 이승만대통령이 평화선을 선언함으로써 영토문제가 표면화되었고, 북방영토문제는 1956년 일소 양국이 공동선언을 발표함으로써 표면화되었다. 독도는 1965년 한일협상을 통해 한국의 실효적 관리가 일본에 의해 묵인되었다. 북방영토문제는 1956년 일소공동선언을 통해 평화조약이 체결될 때 소련이 하보마이, 시코탄도를 일본에게 인도한다고 명확히 했으나,

2) 최장근, 「전후 일본의 ‘센카쿠제도’에 대한 영토전략」, 『독도문제의 본질과 일본의 영토분쟁의 정치학』 제이앤씨, 2009, pp.191-234.

3) 최장근, 「전후 일본의 ‘쿠릴열도 남방4도’에 대한 영토전략」, 『독도문제의 본질과 일본의 영토분쟁의 정치학』 제이앤씨, 2009, pp.145-189.

4) 동북아역사재단편,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제1부 1948-1976년』 동북아역사재단, p.1-1345.

1960년 일본이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소련이 공동선언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센카쿠제도문제는 1968년 유엔이 동중국해의 해저자원을 탐사하는 과정에 석유자원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표함으로써 중국과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여 표면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잠정주권을 인정했던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면서 영유권을 제외한 센카쿠제도의 관할권을 일본에 넘겼던 것이다.⁵⁾

최근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한국의 실효적 관리를 방해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1965년 이후 영토주권 의식이 거의 없었는데,⁶⁾ 최근에 들어와서 주권의식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이 실효적 관리를 방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일본국민들의 영토주권 의식은 가장 강한 지역이다.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으나, 최근 중국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선을 출동시켜 물리적인 방법으로 일본의 실효적 관리를 방해하고 있다.⁷⁾

이렇게 해서 현재 일본은 주변 3국과 북방영토, 센카쿠제도, 독도에 대해 영토문제를 갖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현재 일본이 관할하고 있는 센카쿠제도⁸⁾를 일본영토로서 고착시키는 일, 1855년 일소화친조약에 의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일본영토가 되어 과거에 일본국민들이 거주했다고 생각하는 북방영토⁹⁾를 회복하는 일, 그리고 일본제국주의가 러일전쟁 중에 편입하여 일본영토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한국영토인 독도를 다시 일본영토화 하는 것이 영토정책의 과제일 것이다.¹⁰⁾

5) 최장근, 「전후 일본의 ‘쿠릴열도 남방4도’에 대한 영토전략」, 『독도문제의 본질과 일본의 영토분쟁의 정치학』 제이앤씨, 2009, pp.145-189.

6) 요시오카 요시노리(吉岡吉典), 「다시 ‘죽도(竹島)문제’에 대하여」, 송휘영 엮음, 『일본학자가 보는 독도의 역사학적 연원』, 도서출판 지성인, pp.41-54. 최장근, 「한일협정에서 확인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한계성」, 『일어일문학』 제47집, 대한일어일문학회, 2010.8, pp.429-447.

7) 「中, 센카쿠 영공·해상 동시 진입」,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829510>(검색일 2013년8월19일),

8) 청일전쟁 때 청국의 영토에 포함되는 다오위다오를 중국이 모르는 사이에 은밀히 센카쿠제도라는 이름으로 무주지 선점론을 동원하여 일본영토로 편입 조치했다.

9)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전승국이었던 미소간의 알타협정에 의해 쿠릴열도 전부를 소련이 점령하게 되었다.

10) 「『日방위백서, 올해도 ‘독도는 일본땅’ 주장』」,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7/04/0200000000AKR20130704217200073.HTML?input=1179m>(검색일 2013년 8월 19일)

3. 일본국회의 기본적인 영토인식

(1) 북방영토

1951년 9월 대일평화조약 이후 일본정부 및 정치권의 북방영토의 영유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야당의 전문위원 단 이노(團伊能)는 1953년 12월 24일 대일강화조약 직후 북방영토에 대해 「홋카이도(北海道)의 북쪽에 이르는 하보마이(齒舞), 시코탄(色丹)의 문제와 같은 지극히 국제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점이 없는 상태가 되어있다. (중략) 사실 하보마이(齒舞), 시코탄(色丹) 문제에 대해서도 외무성은 과연 어디까지가 회담에 의한 쿠릴열도 범위인가 하는 개념마저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1875년(明治8년)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가 모스크바에서 체결한 교환조약에서 처음으로 쿠릴열도라는 문자가 나오고 그 안에 18개의 섬의 이름마저도 명료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쿠릴열도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점도 상당히 애매하고 겨우 하보마이(齒舞), 시코탄(色丹)만이 일본의 영토라고 승인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도 일본정부의 확고한 신념이 강하게 요구됩니다.」¹¹⁾라고 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야당위원으로서의 북방영토에 대한 인식을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일평화조약에서 쿠릴열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일본정부도 이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둘째, 1875년 쿠릴열도, 사할린 교환조약을 체결했을 때에 쿠릴열도를 18개의 섬으로 취급하고 있었으므로 북방 4개의 섬 모두 일본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하보마이, 시코탄만을 홋카이도의 부속 섬으로서 일본영토로 인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셋째, 일본정부는 쿠릴열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함에 있어서 쿠릴열도의 범위가 북방4개의 섬 모두임을 분명히 해야한다.

넷째, 대일평화조약 체결당시 일본정부는 쿠릴열도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¹²⁾

이상이 대일평화조약 직후 1953년 야당 전문위원의 지적인데, 이에 대해 일본정부의 입장은 쿠릴열도는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정부는 지시마열도(쿠릴열도) 및 일본국이 1905년 9월 5일 포츠마스조약의 결과로서 주권을 획득한 카라후토(사할린)의 일부 및 여기에 근접한 여러 섬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

11) 「단 이노(團伊能)」, [096/189]19-참의원-본회의- 2호, 1953년12월24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p.214.

12) 毎日新聞社編, 『對日平和條約』 毎日新聞社, 1952의 부속지도를 보면, 사실 대일평화조약에서는 지금 분쟁, 혹은 문제의 한중러와의 3지역은 모두 일본영토에서 제외되었다.

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¹³⁾라는 항목에 홋카이도의 부속 섬인 하보마이와 시코탄, 1955년 러일 화친조약에 의해 평화적으로 일본영토가 된 에토로프와 구나시리는 남부 쿠릴열토로서 쿠릴열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 4 섬은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영토로서 결정되었다는 주장이다.¹⁴⁾

1954년 자유당¹⁵⁾의 입장에서 일본의 북방영토 인식에 대해 「세계대전 말기에 행해졌던 얄타회담에서 스탈린 수상에게 양보하신 루즈벨트 대통령의 잘못은 결국 미국의 극동정책에 큰 화근을 남겼으며, 소련에게는 로마노프 왕조 이래의 다년간의 숙원이었던 극동침략계획의 실현에 절호의 기회를 주어버린 것이다. 즉 종전 직전에 우리나라와의 불가침조약을 찢어버려 만주에 침입한 소련은 그 후 중공정권의 수립에 성공하여 북조선도 그 산하에 넣어 지시마(千島), 가라후토(樺太)를 빼앗고 강력한 군사기지를 세워 지금 우리나라를 포위하고 호시탐탐 위협하고 있다.」¹⁶⁾라고 했다.

즉 일본정부는 1954년 시점에서 미소간의 얄타협정에 의해 지시마(千島), 가라후토(樺太)가 소련에 넘어갔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야당의 모리시마(森島)위원은 1956년 2월 25일 북방영토에 대해 「미국은 남부 지시마(南千島)를 포기했다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딜레스씨는 하보마이(齒舞)제도만을 홋카이도의 일부로서 일본의 영토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시코탄 이북은 전부 소련영토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보여준 팜플렛에서도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으로서에는 그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¹⁷⁾라고 했다.

즉 일본정부가 제시한 팜플렛을 보면, 미국은 일본의 영토범위에 남부 지시마에 해당되는 하보마이, 시코탄, 구나시리와 에토로후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미 국무장관인 딜레스는 하보마이만을 홋카이도의 일부로서 일본영토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정부의 논리는 대일평화조약에서 하보마이, 시코탄은 홋카이도의 일부로서 쿠릴열도에 포함되지 않고, 구나시리, 에토로후는 남부 쿠릴열도로서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쿠릴열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북방4개의 섬은 일본영토라고 주장이다. 결국 일본정부는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북방4개의 섬의 운명이 좌우된

13) 「日本國との平和條約」, 外務省國內廣報課編, 『われらの北方領土』外務省國內廣報課, 2000, p.18.

14) 西口光, 『日ソ領土問題の眞實』新日本出版者, 1981, p.94. 高野雄一, 『國際法からみた北方領土』岩波ブックレット No. 62, pp.30-32.

15) 「自由黨」, 高柳光壽·竹内理三編, 『日本史辭典』角川書店, p.463.

16) 「후쿠다(福田)」, [108/189 19-중의원-본회의- 31호, 1954년3월31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p.235.

17) 「모리시마(森島)위원」 [173/189] 24-중의원-외무위원회회- 12호, 1956년 2월 25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p.377.

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또한 이마즈미 이사오(今澄勇)는 1956년 12월 3일 하토야마 내각에서 북방 영토에 대해 일소공동선언에 의해 「북쪽에 있는 두 섬 에토로프(擇捉)와 구나시리(國後)에 대해 소일 간에 견해를 달리하여 선언 안을 심의하는 참위원에서도 지금 중대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¹⁸⁾라고 했다. 즉 일소공동선언에서 하보마이와 시코탄은 소련이 일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지만, 소련은 에토로프와 구나시리는 일본에 양도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사실상 대일평화조약에서 쿠릴열도에 대한 일본의 잔존주권은 모두 포기되었다. 이는 미소간의 얄타협정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영토적 권원은 완전히 상실되었다. 그런데 일본은 자유진영인 미국에 대해 적대관계에 있는 공산진영의 소련의 이익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선동하여 쿠릴열도 남방 4도를 일본영토로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일본의 노력으로 인해 미국은 쿠릴열도가 전적으로 소련의 영토라는 입장을 지지하지 않았다.¹⁹⁾ 1956년 일소 공동선언에서 소련은 평화조약이 체결된다면 하보마이와 시코탄도는 원래 소련의 영토이지만, 소련이 선의적 차원에서 일본에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2) 독도

1951년 9월 대일평화조약 이후 일본정부의 독도에 대해 영유권 인식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야당 전문위원인 단 이노(團伊能)는 1953년 12월 24일 대일강화조약 직후 독도에 대해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과거 리양쿠르암으로 불리고 오키 섬(隱岐)에 속한 죽도가 모든 면에서 일본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²⁰⁾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특수한 사태에 처해있다는 것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1946년 1월 29일이었습니까? 총사령부각서에 의해 일본영토이면서 일본의 주권으로부터 제외되었다.」라고 지적했다.

단 이노는 1953년 시점에서 죽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었다. 즉 첫째, 죽도가 과거 리양쿠르암이라고 불리면서 오키 섬의 소속이었는데,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모든 면에서 일본영토에 속한다. 단 이노의 이러한 인식은 국회의원으로서 일본국가의 이익을 위해 죽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정부의 방침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²¹⁾

18) 「이마즈미 이사오(今澄勇)」, [185/189 25-중의원-본회의- 10호, 1956년12월3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p.298.

19) 和田春喜, 『北方領土問題 一歴史と未來一』朝日選書, 1999, pp.219-228.

20)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9, pp.15-251.

둘째, 1946년 SCAPIN 677호에 의해 죽도가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특수한 사태에 처해있음을 알고 있었다.

셋째, 일본영토인 죽도를 이승만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때 외교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했다.

넷째, 1946년 1월 29일 SCAPIN 677호에 의해 죽도가 일본영토에서 분리되었으며, 대일평화조약에서 죽도가 일본영토로서 결정되었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에 대해 그다지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

사실 독도는 종전직후 1946년 SCAPIN 677호에 의해 통치권과 행정권이 일본에서 분리되어 한국에 소속되었다. 대일평화조약에서는 일본이 미국에 로비하여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영연방국가들은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한국영토라는 종래의 입장을 포기하지 않다. 그래서 결국 연합국은 독도문제를 당사지간의 외교적 해결을 바라면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자의적 해석으로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는데, 한국이 무력으로 불법 점령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²¹⁾

야마노(山野) 정부위원은 1969년 2월 26일 「죽도는 현재도 일본의 면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특별교부세의 대상이 아닌 보통교부세의 대상으로서 일단 면적에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관할권행사가 실제로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보통지역과 같이 교부세를 산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자치단체에서도 또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²²⁾라고 했다. 즉 일본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 면적에 포함시켜서 보통교부세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섬이기 때문에 보통교부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스스로 지적했다.

사실 일본정부가 독도와 북방영토를 교부세 면적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일단 일본영토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일본인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교부세를 납부할 대상이 없다. 이는 순전히 형식적인 조치로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

21) 오늘날에도 이들의 인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죽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下條正男이고, 그의 논리는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文春新書 377, 2004, pp.7-188)에 정리되어 있다.

22) 오오니시 토시테루, 「평화조약의 기술」, 『독도개관』 인문사, 148-149. 최장근, 「전후 일본영토 처리 특수성과 국경분쟁의 발생」, 『일본의 영토분쟁』 백산자료원, 2005, pp.72-107.

23) 「야마노(山野) 정부위원」, [002/219] 61-중의원-예산위원회 제1분과회- 3호, 1969년 2월 26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p.1166.

4. 센카쿠와 독도의 영토적 권원의 비교 인식

(1) 1970년 전후 양 섬에 대한 일본의 실효적 관리 상황

센카쿠제도문제는 1968년 유엔의 동중국해 해저자원조사에서 석유자원이 대량으로 매장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대만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여 표면화되었다. 미국은 일본의 요청에 의해 1972년 오키나와 반환과 더불어 센카쿠제도의 관할권을 일본에 주었다. 그렇다면 오키나와 반환 이전 센카쿠제도에 대한 일본정치권의 인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야당 전문위원 와다 시즈오(和田靜夫)는 1970년 10월 7일 센카쿠제도와 독도의 상황에 대해, 「센카쿠제도의 영유권 문제라는 것은 센카쿠제도의 - 지금 논의가 오고간 주변해저에 잠들어 있는 방대한 양의 석유자원은 일본의 국익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65년 한일협상 때 시마네현 앞 바다에 있는 죽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팽팽한 분위기 속에서 외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미 그곳에 한국의 군대가 소수이긴 하지만 주둔하고 있었고 향후 한일 간에 계속 논의를 해가는 분쟁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죽도의 영유를 자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입장으로는 죽도의 영유에 대해 많은 근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죽도에서 손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센카쿠제도의 경우에도 지금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청천백일기(靑天白日旗)가 걸리고 어부도 귀환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대만의 어부가 거둬서 상륙하고 죽도와 같은 상황이 된 점에 대해 우려하는 이들이 많습니다。」²⁴⁾라고 지적했다.

이상으로 1970년 즈음의 독도와 센카쿠제도에 있어서 일본의 실효적 관리 상황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도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협상 때 현실적으로는 소수의 한국군대가 주둔하여 한국이 실질적으로 영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외교적으로 영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했고, 현재는 일본이 손을 떼고 있고 한국이 자주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인식이었다. 그러나 일본이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에 영토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당시 실제로는 대만국기가 게양되었고, 일본어 부도 귀환한 상태인데다 대만어부가 상륙하는 섬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중국해에 석유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독도처럼 센카쿠제도의 관할권을 대만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4) 「「와다 시즈오(和田?夫)」, [021/219]63-참의원-결산위원회- 7호, 1970년10월7일, 『일본국회독도 관련기록모음집』, p.1185-1186.

이처럼 센카쿠제도는 무인도로서 1970년 단계에서 일본이 실효적 관리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점유의 우위권을 점하기 위해 상륙을 시도하는 섬이었다.

또한, 야당 전문위원인 이시가와(石川) 위원은 1970년 9월 7일 대만정부가 센카쿠제도에 대만국기를 세워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죽도에 관한 협상결과를 보더라도 지금과 같은 단순한 유감을 느낀다는 것을 피력하는 정도로서는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센카쿠제도는 일본의 영토이고 이는 역사적으로 명백한 것이고, 미국정부도 오키나와 정부도 확실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단순히 유감이라는 정도로 마무리 지을 문제는 아닌 것 아닙니까? 이는 단순히 민간 어선이 가서 세웠다는 문제와 차원이 다릅니다. 정부의 배가 가서 청천백일기(靑天白日旗)(대만국기)를 세웠다면 무단으로 남의 나라에 들어와 우리 영토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정부의 의도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져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그저 단순히 유감스럽다는 정도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도의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부근에 석유 등 해저자원이 매우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발표가 나온 시점에서 죽도 이상으로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니 외무성도 보다 집중적으로 협상을 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²⁵⁾라고 지적했다.

즉 첫째, 센카쿠제도는 역사적으로 명명백백한 일본영토이고 미국정부도 오키나와정보도 일본영토임을 인정했다.²⁶⁾ 그런데 대만정부가 대만국기를 그 섬에 세워서 영토주권 침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단지 「유감」 표명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독도와 같이 한국에 점령당하고 만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외교적 교섭을 행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그 제도주변에 석유자원이 매장되었기 때문에 더욱이 일본영토로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요컨대 1965년 한일 협정에서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정부가 이를 묵인하여 실제로는 한국이 자주적으로 독도를 관리하고 있고, 일본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센카쿠제도의 경우도 대만정부가 대만국기를 게양하였기 때문에 독도처럼 관할권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는 것이다.

25) 「이시가와(石川) 위원」, [019/219]63-중의원-과학기술진흥대책위원회- 14호, 1970년9월7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p.1184.

26) 선행연구 「井上清, 『尖閣列島』現代評論社, 1972, pp.9-278.」에 의하면 센카쿠제도는 역사적 권원으로 볼 때 일본영토가 아니다.

그런데 야당 전문위원들은 국익을 위해 정부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독도와 센카쿠제도가 역사적으로 일본영토로서 권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사실과 달리 일본이 센카쿠제도는 청일전쟁, 독도는 러일전쟁 중에 은밀한 방법으로 불법 도취한 것일 뿐이다.

(2) 센카쿠제도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일본정부의 인식

일본정부는 1972년 오키나와 반환을 앞두고 센카쿠제도의 법적 지위에 대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즉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국무대신은 1971년 12월 16일 센카쿠제도의 법적 지위에 대해 「오키나와 반환협정에 의해 귀속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청일전쟁 때 우리는 대만, 평후다오(澎湖島)를 할양받았습니다. 그때 센카쿠(尖閣)제도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화조약 제3호에서 우리는 대만, 평후다오(澎湖島)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센카쿠(尖閣)제도를 포함하는 오키나와(沖繩) 열도는 신탁통치, 또는 임시로 미국의 관할권 지역이었습니다.」²⁷⁾라고 했다.

즉 센카쿠제도는 오키나와의 일부로서 청일전쟁 중에 일본의 신영토로서 편입한 것이다. 청일전쟁의 결과인 시모노세키 강화조약과도 무관하기 때문에 오키나와 반환협정에서 센카쿠제도를 일본에 반환한다고 명확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은 미국이 중국과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서 센카쿠제도의 영유권에 대해 분쟁지역으로 취급하여 오키나와 반환 때에 단지 관할권에 한정해서 일본에 반환한 것이다.²⁸⁾ 미국은 영유권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래서 센카쿠제도문제는 중일 양국 간의 외교문제로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서 남게 되었던 것이다.

5. 북방영토와 독도의 영토적 권원의 비교 인식

(1) 일본정부의 북방영토의 지위

북방영토문제는 1956년 일소공동선언을 합의한 이후 본격적으로 표면화되었다.²⁹⁾ 야당 전문위원인 쓰지 마사노부(辻政信)는 1960년 3월 21일 공동선언 이

27)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국무대신」, [033/219]67-참의원-오키나와반환 특별위원회- 7호, 1971년12월16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p.1213.

28) 최장근, 「중일 조어도 영토분쟁의 발생과 현황」, 『일본의 영토분쟁』 백산자료원, 2005, pp.305-332.

29) 安岡昭男, 『幕末維新の領土と外交』 清文堂出版, 2002, p.227.

후의 일본의 북방영토인식에 대해 「공동선언이 있었다고 하셨지만, 샌프란시스코조약에 나와 있는 지시마(千島)라는 지명에는 남부 지시마(南千島)³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영토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기시(岸)총리가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올 봄부터 교과서에서 구나시리(國後), 에토로후(擇捉)를 일본영토로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할권을 소련에 양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관할권과 영유권을 양도한 것은 구나시리, 에도로프를 포함하지 않는 그 북쪽의 지시마(千島)입니다.」³¹⁾라고 했다.

즉 야당의 전문위원은 국익차원에서 일본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아무런 비판없이 북방영토가 일본영토라는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일본정부는 1956년 일소공동선언 이후 시점에서 북방4섬이 일본영토임을 일본 국회에서 주장했다. 그리고 일본정부의 논리를 1960년부터 교과서를 통해 구나시리와 에토로후가 일본영토라는 사실을 일본학생들에게 학교교육을 통해 주입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북방영토에 대한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분명히 일본영토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는 이처럼 학교교육을 통해 영토인식을 주입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위원 다카하시 미치토시(高橋通敏)는 1960년 3월 21일 공동선언에 대해 「소일 간에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공동선언에서는 이러한 도서지역에 대한 최종적인 문제해결은 평화조약에서 하자고 상호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이들 도서지역의 지위가 그러한 법률적 지위가 생기는 것입니다.」³²⁾라고 하여 소일간의 도서문제는 공동선언을 통해 평화조약을 체결할 때에 결정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1970년대 미일 간의 오키나와 반환협정으로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되는 시점에 북방영토와 독도문제에 대해서도 중대한 외교과제로서 대두되었다.

야당측의 모리야 오사무(守屋治) 참고인은 1969년 5월 7일 북방영토에 대한 일본정부의 인식에 대해 「종래 북방영토에 관해서는 남방(南方)에 비해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저조하고 그 운동도 지역적인 것으로 홋카이도(北海道)의

30) 일본은 쿠릴열도에서 분리함으로써 대일평화조약에서 「쿠릴열도의 영토적 권원을 포기한다」라는 규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구나시리(國後), 에토로후(擇捉)를 ‘남부 지시마열도’라고 주장한다. 또한 하보마이 섬과 시코탄 섬은 홋카이도의 부속 섬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방 4개의 섬은 쿠릴열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일본적인 논리로서 러시아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북방4개섬을 포함한 22개섬이 쿠릴열도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31) 「쓰지 마사노부(辻政信)」, [043/254]34-참의원- 예산위원회 - 18호, 1960년3월21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p.502.

32) 「정부위원(다카하시 미치토시(高橋通敏))」, [043/254]34-참의원- 예산위원회 - 18호, 1960년3월21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p.502.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종래 북방영토(北方領土)에 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범위와 문제점에 관한 이해와 인식도가 낮았고, 운동단체도 인양(引揚)도민과 홋카이도에 있는 영토귀환단체, 홋카이도청, 네무로(根室)시 등 주로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선의와 노력에 맡겨진 것입니다.»³³⁾라고 비판했다.

즉 1969년 시점에서 북방영토에 대한 영토회복운동은 전 국민적으로 영토회복의식이 없었고, 단지 홋카이도 일부 관련자들만이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 이유는 일본정부 입장에서 당장 시급한 오키나와 반환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키나와는 대일평화조약에서 이미 일본의 잔존주권을 인정하여 일정한 시기에 반환한다는 약속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에서도 북방영토가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영토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1956년에 일소공동선언에서도 양국이 평화조약을 체결할 경우에 소련이 선의적 차원에서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일본에 양도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이외에는 사실상 구나시라와 에도로프의 반환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야당 전문위원 야마모토 도시나가(山本利壽)는 1970년 3월 24일 북방영토에 대한 일본의 지위에 관해 니시무라(西村) 조약국장이 의회에서 배포한 지도에 대해 「방금 말한 지도(일본영역참고도(日本領域參考圖)에 하보마이(齒舞), 시코탄(色丹)과 같은 섬이 역시 일본영역 외로 되어 있습니다.»³⁴⁾ 「북방영토 반환에 대한 협상에서 소련의 대답이 항상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으로 해결된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정부기관이나 보도기관에서 국민들에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³⁵⁾라고 했다.

즉 조약국장이 국회에 배포한 「일본영역참고도(日本領域參考圖)에 하보마이(齒舞), 시코탄(色丹)과 같은 섬이 역시 일본영역이 아니라고 표기되어 있었던 것을 보더라도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영토로 결정된 것이 아니었다.³⁶⁾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정부에서도 북방영토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한 적은 있었지만, 국민들에게는 북방영토의 사실관계에 관해 정확히 설명한 적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33) 「모리야 오사무(守屋治) 참고인」, [009/219]61-참의원- 오키나와 및 북방문제에 관해서 - 7호, 1969년5월7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p.1171-1172.

34) 「야마모토 도시나가(山本利壽)」, [015/219]63-참의원- 예산위원회 - 6호, 1970년3월24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p.1179.

35) 「야마모토 도시나가(山本利壽)」, [015/219]63-참의원- 예산위원회 - 6호, 1970년3월24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p.1180.

36) 不破哲三, 『千島問題と平和條約』新日本出版者, 1998, pp.165-159. 毎日新聞社編, 『對日平和條約』毎日新聞社, 1952의 부속지도 참조.

또한 야당의 전문위원인 가와무라 세이치(川村清一)는 1970년 5월 11일 북방영토의 지위에 관해 「애당초 정부의 견해가 일관성이 없어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는 구나시리(國後), 에토로후(擇捉), 하보마이(齒舞), 시코탄(色丹)은 고유영토이다, 일본의 영토이다. 평화조약으로 포기하지 않았다, 이 점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점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C)항에서 국회에서 정부위원들이 확실히 포기한 이 지시마(千島)열도 안에는 구나시리(國後), 에토로후(擇捉), 하보마이(齒舞), 시코탄(色丹)은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는 회의록에 확실히 기재되어 있습니다.」³⁷⁾라고 했다.

즉 다시 말하면, 해방이후 2주나 후에 소련군이 시코탄 섬에 주둔한 것으로 보아 알타협정에서 미국이 소련영토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미 1946년 GHQ의 각서에서도 북방4개 섬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북방영토를 포기하지 않았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도 일본영토로서 결정되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래서 야당 전문위원이 사실상 홋카이도 주민에게는 어업권을 보상해 주면서 북방4개섬의 주민들에게 어업권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결국 알타협정에 의해 대일평화조약에서 영토주권을 포기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정부주장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 측의 입장도 「소련 측이 서류, 기타의 것에서 명확 시한 예로서는 1961년 12월 8일, 이케다(池田)내각 당시 총리장관 앞으로 전해진 흐루시초프 서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쪽이 주장하는 것은 카이로선언, 알타협정, 포츠담선언,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와 같은 것을 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글로서 그쪽의 태도를 밝히는 문서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1961년으로 상당히 오래 전입니다.」³⁸⁾라고 했다. 즉 1961년 시점에서 소련이 북방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³⁹⁾고 주장했기 때문에 당시로서 일본정부 입장에서는 북방영토가 일본영토라는 확신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실제로는 일본정부가 일본국민을 상대로 북방4개 섬은 대일평화조약에서 ‘쿠릴열도의 영토적 권원을 전적으로 포기한다’고 하는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⁴⁰⁾ 사실상 북방 4개 섬은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영토에

37) 「가와무라 세이치(川村清一)」, [017/219]63-참의 - 오키나와와 북방영토에 관해서...- 9호, 1970년5월11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p.1181-82.

38) 「위원장 퇴장, 이사 요시다케 케이치(吉惠市)착석」, [015/219]63-참의원- 예산위원회 - 6호, 1970년3월24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p.1180.

39) 戸丸廣安監修, 『北方領土-新聞編集-上卷 1947年-1979年』大空社, 1993, p.193.

40) 木村汎編, 『北方領土を考ふる』北海道新聞社, 1981, p.88.

서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대체로 부정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⁴¹⁾ 그리고 일본 정부는 대일평화조약에서 잔존주권이 인정된 오키나와 반환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영토로서 규정되지 않은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관심밖에 일이었다. 그래서 1972년 오키나와 반환 이전에는 사실상 북방영토반환에 관해서는 민간단체에 의해 반환운동이 행해졌던 것이다. 오키나와 반환이후 일본정부가 북방영토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2) 일본정부의 독도와 북방영토의 지위에 대한 인식

일본정부는 대일평화조약에 체결되고 난 이후 일본국민들을 상대로 북방영토와 죽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났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야당위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정부위원 다카하시 미치토시(高橋通敏)는 1960년 3월 21일 죽도문제와 북방영토문제의 법적인 지위에 대해 언급했다.

독도에 대해서는 「죽도의 경우는 한국이 사실상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에 대해 우리가 공동선언을 했거나 저쪽과 협의를 해서 그것을 인정한다고 했거나 아니면 불문에 불인다고 했거나 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점은 (북방영토와는-필자주) 법률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⁴²⁾라고 했다.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죽도문제와 북방영토문제는 법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죽도문제는 북방영토문제처럼 소련 측과 합의한 공동선언 같은 것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따라서 북방영토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공동 선언에서 일단 평화조약이 이루어 질 때까지는 이대로 간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⁴³⁾라고 했다.

요컨대, 일본정부는 「과거의 경위⁴⁴⁾에 대해서나 죽도가 우리의 영토이고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만 불법적인 침입을 받아 지금과 같은 상태에 있다.」⁴⁵⁾고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독도는 한국정부와 합의를 한 적이 없는데 한국이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북방영토는 일본의 고유영토임에도 불구하고,

41) 「千島の放棄と北方領土問題」, 芹田健太郎, 『日本の領土』中公叢書, 2002, pp.52-66.

42) 「정부위원(다카하시 미치토시(高橋通敏)), [043/254]34-참의원- 예산위원회 - 18호, 1960년3월21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p.503.

43) 「정부위원(다카하시 미치토시(高橋通敏)), [043/254]34-참의원- 예산위원회 - 18호, 1960년3월21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p.502.

44)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지식산업사, 1996, pp.23-322)와 内藤正中·朴炳涉, 『竹島=獨島論争』(新幹社, 2007, pp.11-342) 등 역사학자로서 한일 양국의 독도연구가들의 인식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결론이 지배적이다.

45) 국무대신(후지야마 아이치로(藤山愛一郎)), [044/254]34-참의원- 예산위원회 - 19호, 1960년3월22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p.504.

러시아와 공동선언으로 합의한 분쟁지역으로 평화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에는 지금처럼 소련의 점유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독도와 북방영토는 법적 지위가 다르다고 일본정부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일본정부는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일본영토인데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것은 단지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의 고유영토를 회복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액션에 불과했다. 대일평화조약에서 연합국은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아무런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한국의 점유상태를 인정하였던 것이다.⁴⁶⁾

야당의 전문위원인 가와무라 세이치(川村清一)는 1970년 4월 27일 독도와 북방영토의 지위에 관해 「그쪽 경위는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서양선언, 이에 따른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뒤이은 일본국의 무조건 항복, 그리고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이런 식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조약에서 일본은 제2조 (C)항에서 지시마(千島)열도를 포기했다. 하지만 지시마열도에는 구나시리(國後), 에토로후(擇捉)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이 1946년 1월 29일의 양해각서, 이는 최고사령관의 각서인데, 하지만 그 위의 이른바 연합국의 최고수뇌부가 정치적으로 결정한 이 사항에 군사령관의 각서는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반이 아니라면 적어도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각서에는 죽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범위로서 제외되는 지역으로서 죽도도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연합국의 최고수뇌부가 결정한 전략노선에 현지 군사령관은 위반 - 그렇다면 말이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 방침을 그르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까?」⁴⁷⁾라고 했다.

즉 야당 전문위원은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와 북방영토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을 아무런 비판없이 수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연합국이 대일평화조약에서 북방영토와 죽도를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1946년 연합군사령관지령 SCAPIN 677호에서 죽도와 북방영토를 일본영토에서 제외시킨 것은 연합국의 최고수뇌부가 결정한 전략노선에 현지 군사령관이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야당 위원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사실상 SCAPIN 677호는 대일강화조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1946년 연합군최고사령관이 우선 잠정적으로 죽도와 북방영토에 대해 통치권과 행정권을 결정한 것

46) 최장근, 「일본정부의 대일평화조약 시기의 ‘죽도’ 영유권인식 -일본국회의사록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제48집, 2011.2, pp.353-372.

47) 「가와무라 세이치(川村清一)」, [016/219]63-참의원-오키나와 및 북방문제에 관해서...- 8호, 1970년4월27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p.1181.

이고, 1951년 9월의 연합국에 의한 대일평화조약은 최종적인 영토조치를 내린 것이다. 대일평화조약에서 북방영토는 일본영토에서 제외되었고, 독도는 영토적 지위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아리타 케스케(有田圭輔) 정부위원은 「이는 일본이 항복하여 점령 하에 두고 어떻게 일본에 대해 점령행정을 하는가 하는 사의(使宜)」적인 조치로 이에 따라 일본국의 영역이 결정되었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또 그렇게 이해해야 할 성질의 명령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본영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결정되고, 또 대 소련관계에서는 향후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령은 명령으로서 그 이전에 연합국 측의 결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⁴⁸⁾라고 하여 연합국의 명령은 점령을 위한 행정조치로서 편의적인 것에 불과하고 일본영토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영토를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사실상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죽도와 북방영토가 일본영토로 결정된 적이 없다.⁴⁹⁾ 이러한 일본정부의 상투적인 주장은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6.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와 미국에 대한 인식⁵⁰⁾

1960년 미일 간에 미일안보조약이 체결되고 죽도가 미군의 관할구역에 포함되는냐 마느냐는 죽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했다. 미국이 죽도를 일본영토로서 인정하는 것은 국제적인 동조를 받아 내는데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야당 전문위원인 지다 다다시(千田正)는 1960년 3월 22일 신안보조약과 독도에 관해서 「미국과 한국이 맺은 한미조약에 죽도를 지칭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죽도가 들어가 있고, 한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곳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우리는 죽도가 일본영토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현재는 한국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미일안보조약의 범위에 죽도가 들어간다고 한 국무대신 후지야마 아이이치로(藤山愛一郎)의 말처럼, 일

48) 「아리타 케스케(有田圭輔) 정부위원」, [016/219]63-참의원-오키나와 및 북방문제에 관해서...- 8호, 1970년4월27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p.1181.

49) 不破哲三, 『千島問題と平和條約』新日本出版者, 1998, pp.165-159. 毎日新聞社編, 『對日平和條約』毎日新聞社, 1952의 부속지도 참조.

50) 일본의회의 영토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주체가 영유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영토인식이 바로 전국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국가가 영토를 포기한다든가, 영토를 취득한다든가 하는 것처럼 국제법적으로 영유권을 확립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본의 신 안보조약에 죽도가 들어가 있다면 한미 간의 조약과 중복되고 모순되는 점이 있다.»⁵¹⁾라고 하여 한미조약에 의해 미군의 관할구역에 분명히 독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체결된 신 미일안보조약에도 죽도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국무대신 후지야마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미국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신 미일안보조약에 죽도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본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다 다다시(千田正)는 1960년 3월 22일 국제사법재판소와 독도와 관련해서 「지금 외무부 장관이 말씀하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은 한국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희망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또 미국한테 양해를 구하지 못하면 국제법상으로 유효한 조약상의 구역이라고 선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⁵²⁾라고 하여 일본정부가 죽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서 해결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지만, 이것은 한국이 동조하지 않으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결국은 한일 간의 외교적 해결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일본정부가 미일 신 조약에 죽도를 포함시켰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 측의 후지야마 아이이치로(藤山愛一郎)는 1960년 3월 22일 영유권에 대해 「죽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그것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일본의 관할권 아래에 있다는데 대해 이의가 없다는 전제하에 드린 말씀입니다.»⁵³⁾라고 하여 일본정부가 죽도를 직접적으로 실효적인 주권행사를 할 수는 없지만, 그 관할권은 일본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 「이미 우리(일본)는 일본영토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 동안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제안을 하거나 죽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 미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⁵⁴⁾ 「이 문제에 대해 이번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미국이 우리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⁵⁵⁾라고 하여 일본이 지금까지 죽도영유권을 줄곧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번 신 미일안보조약에서 죽도가 미군의 관할구역에 포함된다고 직접적으로 동의는 받지

51) 「지다 다다시(千田正)」, [0444/254]34-참의원- 예산위원회 - 19호, 1960년3월22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p. 503

52) 「지다 다다시(千田正)」, [0444/254]34-참의원- 예산위원회 - 19호, 1960년3월22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p. 504.

53) 후지야마 아이이치로(藤山愛一郎), [0444/254]34-참의원- 예산위원회 - 19호, 1960년3월22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p. 504.

54) 후지야마 아이이치로(藤山愛一郎), [0444/254]34-참의원- 예산위원회 - 19호, 1960년3월22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p. 504.

55) 후지야마 아이이치로(藤山愛一郎), [0444/254]34-참의원- 예산위원회 - 19호, 1960년3월22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p. 505.

않아도 미국은 충분히 죽도가 일본영토임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전문위원인 아키야마 조조(秋山長造)는 일본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확신’이라는 것은 몇 번 들어도 같은 말인데, 중요한 것은 주관적으로 이 쪽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뭔가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⁵⁶⁾라고 하여 상기와 같은 이러한 모든 주장은 일본정부의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즉 일본정부는 죽도가 일본의 영토이기 때문에 신 미일안보조약에 당연히 포함되고, 미국으로부터 죽도가 관할구역 내에 포함되었다고 직접 동의를 받는 않아도 일본이 계속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미국도 죽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야당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오히려 독도는 한미방위조약에 의해 미군의 관할구역에 포함되어서 한국영토로 관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주장은 아주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생각에 불과했다.

7. 맺으면서

본 연구는 1950에서 1970년대 사이 일본의 의회의사록에서 독도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당시 일본정부와 정치권의 영토인식에 관해 고찰했다. 특히 일본정부의 독도에 대한 영토화 의지는 센카쿠제도·북방영토에 비해 훨씬 더 약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상의 연구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일본 국회에서 야당 전문위원들은 독도문제에 대해 1952년 ‘이승만 라인’에 의해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리하게 되었고, 한일협정에서 그러한 상태를 인정하여 독도를 한국영토로서 묵인했기 때문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영토화 정책을 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둘째로, 일본정부는 센카쿠제도가 청일전쟁 때 시모노세키조약과 무관하게 일본의 영토로서 편입한 합법적인 영토이다. 미국의 점령시기에는 미국의 신탁통치하에 있다가 1972년 오키나와 반환과 더불어 영토권과 관할권을 미국으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사실 미국은 센카쿠제도⁵⁷⁾의 관할권만 일본에 넘겨 준 것이지 영토권을 넘긴 것은 아니었다.

셋째로, 야당위원들은 북방영토에 대해,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의 영토로서 결정된 것도 아니고, 대일평화조약 체결 이후도 북방4개 섬이 일본영토라는 사

56) 「아키야마 조조(秋山長造)」, [0444/254]34-참의원-예산위원회 - 19호, 1960년3월22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p. 505.

57) 「사토 에사쿠(佐藤榮作) 국무대신」, [032/219]67-참의원-예산위원회 - 7호, 1971년11월9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p.1212.

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넷째로, 야당 전문위원들은 일본정부가 1960년에 체결된 신 미일안보조약에 독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비판했다. 사실 미국은 한미방위조약에서 독도가 한국영토에 포함된다는 것에 동의했지만, 일본영토에 포함된다고 동의하지 않았다.

요컨대 야당위원은 이들 3지역이 분명한 일본영토라는 일본정부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정부의 소극적인 영토화정책을 비판했다. 야당의 전문위원들은 센카쿠제도의 경우 영토정책을 소홀히 하면 독도처럼 관할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영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제1부 1948-1976년』 동북아역사재단, p.1-1345.
- 송병기(1999)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 출판부, pp.15-251.
-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pp.23-322.
- 오오니시 토시테루(2011) 『독도개관』 인문사, pp.148-149.
- 최장근(2010.8) 「한일협정에서 확인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한계성」, 『일어일문학』 제47집, 대한일어일문학회, pp.429-447.
- 井上清(1972) 『「尖閣」列島』現代評論社, pp.9-278.
- 外務省国内広報課編(2000), 『われらの北方領土』外務省国内広報課, p.18.
- 木村汎編(1981) 『北方領土を考える』北海道新聞社, p.88.
- 下条正男(2004)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文春新書377, pp.7-188.
- 芹田健太郎(2002) 『日本の領土』中公叢書,, pp.52-66.
- 戸丸広安監修(1993) 『北方領土 一新聞編集一 上巻1947年-1979年』大空社, p.193.
- 内藤正中·朴炳涉(2007) 『竹島=独島論争』新幹社, pp.11-342.
- 安岡昭男(2002) 『幕末維新の領土と外交』清文堂出版, p.227.
- 毎日新聞社編(1952) 『対日平和条約』毎日新聞社, 부속지도.
- 和田春喜(1999) 『北方領土問題 一歴史と未来一』朝日選書, pp.219-228.

要 旨

The Japanese government require territorial sovereignty on Takeshima, Senkaku Islands, northern territories. Current Korea actually has managed Takeshima, and Japan has actually managed Senkaku Islands, and Russia has actually managed the Northern Territories. this study are analyzed Japan's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1950 to 1970. In particular, The Japanese government was not claimed the Senkaku Islands and the Northern Territories for less than Dokdo. The reason is as follows. South Korea managed effectively before the signing of the peace treaty. The reason is that Union recognized Dokdo as Korea territory in the peace treaty. In addition, The Japanese government has recognized Dokdo as Korea territory implicitly in the peace talks between Korea and Japan. However, the Government of Japan strongly argued for the sovereignty on Northern Territory. Okinawa was returned to Japan from the United States. then the United States had given the Jurisdiction right of Senkaku Islands to Japan. Taiwan and China demanded Senkaku Islands territorial sovereignty to the Japanese. Currently Japan and China are surrounding on the ownership of Senkaku Islands. Japan are in trouble for China to claim ownership of Senkaku Islands. Japan got in trouble for Russia does not give up ownership of the archipelago kulril.

キーワード : Senkaku Islands, daowi Island, Northern Territory, Kuril Islands, Dokdo, Takeshima

투 고 : 2014. 2. 28
1차 심사 : 2014. 3. 15
2차 심사 : 2014. 4. 5